

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발의]

| |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2541 |
|------|------|

발의일자 : 2024. 5. 28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

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프리랜서의 권익침해 예방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정착유도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관내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조례의 적용 대상(안 제3조)

다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(안 제7조 및 제8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프리랜서”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
2. “공공기관 등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금천구의 사무위탁기관, 금천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, 민간기업, 협회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, 보수, 계약조건 등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기본계획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
3.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4.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프리랜서 대상 법률·세무·노무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
2.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
4.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

문기관이나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프리랜서 관련 기관·단체,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